

의안번호	
의 퇴 인	조정훈 의원
회 답 일	2024.08.08.
추계번호	24C236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의5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2조의5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기존 사업이 확대 또는 신규 사업으로 실시될 구체적 사업의 내용과 소요 예산 규모 등을 예상하기 어려워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 '20년 8월 관계부처 협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생애주기별(영·유아~고령층) 맞춤형 교육을 통한 스마트폰

바른 사용습관 형성 및 자기조절 능력 배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올바른 미디어 기기 이용 습관화”와 전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역기능 예방 교육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신기술 대응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계획한 바 있음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 등¹⁾을 근거로 “클린스마트모바일환경조성”사업과 “클린인터넷서비스환경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 (클린스마트모바일 환경조성)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및 사이버언어폭력 예방관리 시스템 운영과 사이버안심존 SW등 보급 활성화, 청소년 보호SW, 태블릿PC용 유해정보차단 SW운영
 - － (클린인터넷서비스 환경조성)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 사업자 및 유해정보 유통 의심 사업자 대상 청소년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 점검체계 운영
- 다만, 개정안이 실시될 경우 동 법의 제안이유를 고려할 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비롯한 시책이 추가로 실시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신규·확대될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소요예산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